

제 4 차 관 광 개 발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021. 08

# 01

##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계획 연혁 및 추진경위
-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 1.5 계획의 내용
- 1.6 계획의 기대효과

#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1.1 계획의 배경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만료시기(2021년) 도래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한 법정계획으로서 10년 중장기 계획이며 우리나라 관광개발 최상위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함
  - 2021년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2022년부터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이 시작되어야 함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한 국가단위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적용되는 기간의 대한민국은 인구구조, 생활양식, 가치관, 지역 및 국제관계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국가 관광개발정책방향의 체계적 모색이 중요함
  -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제관광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관광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2022년부터 추진될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는 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권역 특성화 계획, 관광(단지) 지정 근거계획의 성격을 갖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년)과 동일한 시기에 수립되어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계획 수립

####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1.2 계획의 목적

- 사람과 지역 중심의 미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범위를 바탕으로 사람(관광객)과 지역(관광목적지) 중심의 관광개발 비전을 제시함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을 선도하고 법정계획 성격을 갖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으로서 국내·외 여건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
- 중장기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관광 발전 견인
  - 인구구조,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가 관광개발 전략과 국민 삶의 질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관광발전 전략을 제시함
- 국가단위 법정관광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최상위 국가관광계획으로서 주변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국제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 관광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함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계획)에 해당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마.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 1.3 계획 연혁 및 추진경위

#### 1.3.1 계획의 연혁

- 「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93)
  - 비전 및 전략 : 국토이용개념의 개발 체계확립, 관광수요와 부합하는 균형적 개발  
개발·관리체계 형성,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
- 「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01. 7)
  - 비전 :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1~2021)」('11. 12)
  - 비전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 1.3.2 계획의 수립 경위 및 계획

- '20. 5 : 1차 권역별 협의회 개최(제3편 권역계획 방향성 논의)
- '20. 7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행사일정 논의
- '20. 8 : 온라인 국민참여단 구축계획 논의
- '20. 9 : 전략 이슈 방향성 재조정
- '20. 9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성과평가 결과분석
- '21. 3 : 전국민 홈페이지 및 청년참여단 활동
- '21. 3 : 1차 총괄자문단 회의(비전 및 목표, 전략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21. 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 '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예정)
- '21. 11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 공고 (예정)

### 1.4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절차

공 정	비 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 : 10명 내외(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li> <li>○ 구성주체 : 계획수립 행정기관(법 제11조)</li> <li>○ 시행일 : 2021.08.05.(대면심의)</li> </ul>
↓	
○ 평가준비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방법 : 법 제7조, 시행규칙 제2조</li> </ul>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사항 : 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9조</li> <li>○ 평가준비서 심의기간 : 30일 이내(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li> </ul>
↓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li> <li>○ 공개처 : 관할행정기관 또는 계획수립기관의 정보통신망,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시행령 제10조)</li> <li>○ 공개기간 : 14일 이상(시행령 제10조)</li> </ul>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li> <li>○ 제출처 : 환경부(또는 지방환경청), 승인기관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li> </ul>
↓	
○ 환경부 협의(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내용 통보기간 : 30일 이내(40일까지 연장가능)(시행령 제25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li> </ul>

### 1.5 계획의 내용

-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31년(10년)
  - 공간적 범위 : 전국(한반도)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관광여건과 관광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설정 등을 포함함
- 계획수립기관(수립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lt; 표 2.4 - 1 &gt; 계획의 내용과 범위

권역별	범위
비전편	-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역할 - 여건변화 분석 및 평가 - 계획의 미래
전략과제편	- 전략별 계획 - 계획 추진과제
권역편	- 광역권 관광개발 방향 -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추가검토서	- 전략환경평가 - 국토계획평가요청서

### 1.5.1 계획의 방향

#### 가. 관광개발 패러다임 변화

##### 1) 자원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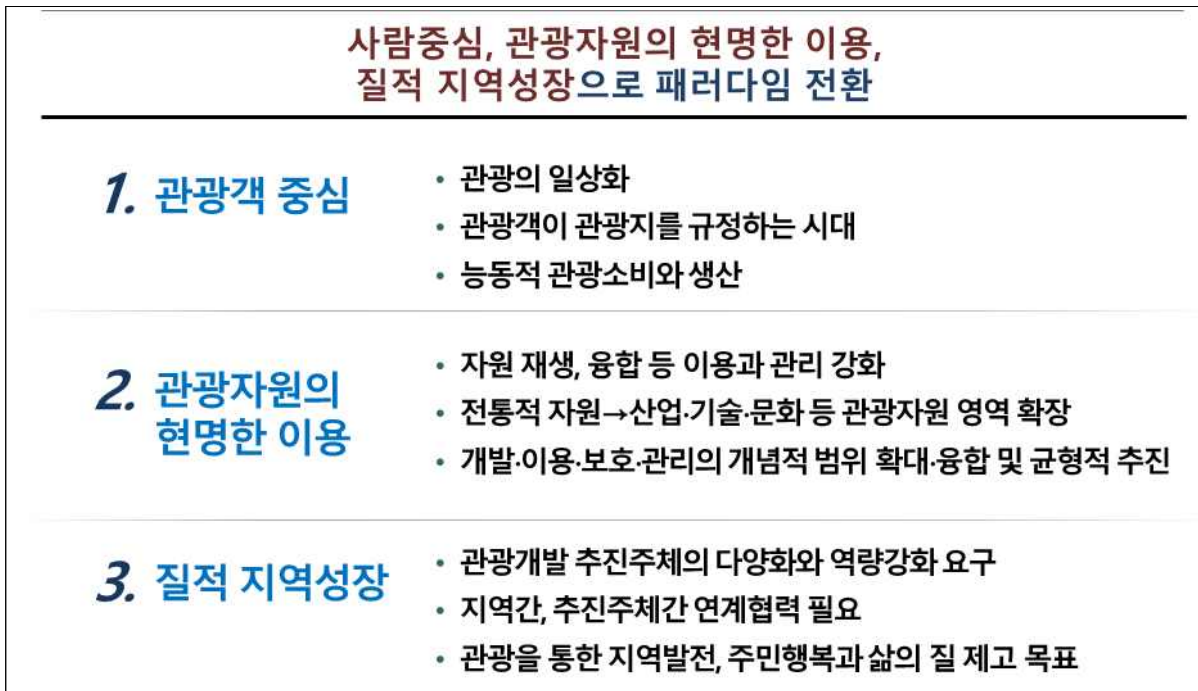
- 관광개발은 관광자원 가치의 우수성과 관광수요의 요구가 일치하고,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주체가 관광자원의 고유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행함으로써 성공 가능
- 10년 후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은 자원 중심의 일방적인 개발과 단순한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의 시선에서 관광자원을 바라보고 자원, 시장, 주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
-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추진주체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더불어 관광객의 요구에 주목하고 이를 담아 내는 수단으로 개발, 이용, 보호, 관리가 작동하는 관광개발 추진

##### 2) 매력적인 개발에서 현명한 이용 강조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식은 관광 개발 모델로서 관광개발 도입기에 국가 관광 정책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산업분야와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감소 추세
- 관광자원 가치의 우수성과 관광수요의 요구가 일치하는 관광자원 개발은 자원 우수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의 방향성과 더불어 자원과 관광객이 교감하는 접점을 찾는 이용, 보호, 관리의 영역에서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전통적인 관광지 개념이 바뀌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역민 생활공간이 관광자원화 되고, 광범위한 도시와 권역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면서 공간과 자원에 대한 현명한 이용이 중요한 관광개발 방향으로 인식
- 미래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발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매력을 발산시키고, 관광개발의 대상, 형태, 유형, 방식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이용, 보호, 관리의 영역을 강화

### 3) 양적 수요 확대에서 질적 지역 성장 추구

- 기존 국가 관광개발과 지역관광 정책은 계획된 목표 수요에 대응하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였고, 양적 수요에 맞춘 투입 요소 확대는 중복 개발과 난개발, 조성 이후 운영 부실 등의 지역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미래 관광개발은 관광객의 양적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개발이 아니라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만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전환
- 미래 관광개발은 관광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주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활동가 등 지역사회 각 부문 주체들이 책임있는 개발과 경영을 통해서 분담하는 정책 필요



(그림 1.5.1-1) 기본가치 및 비전



## 나. 계획의 추구 가치

### 1) 공존 : 협력과 균형

- 관광자원의 영역 확장 및 가치의 생산은 추진주체의 다양화 및 전문성 강화, 추진방식의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과 민간, 지역, 관광개발의 요소들간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 요소
-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소외된 관광시장과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추진과정과 성과 분배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는 공존과 균형의 관광개발 중요
- 협력과 균형을 담은 공존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자원중심의 일방주의를 탈피하여 자원, 시장, 주체가 상호작용함으로써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여 실질적으로 유효한 성과를 도출하는 관광개발 방향 지향

### 2) 혁신 : 융합과 확장

- 관광자원의 영역 확장은 지역의 일상공간, 지역산업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경계가 없어 짐에 따라 공간적으로 도시 및 지역, 콘텐츠적으로 산업, 교육, 복지 등 전 분야로 개방적으로 접근하여 융합 필요
- 새로운 과학기술 등을 확장된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등에 접목하여 활용하는 혁신적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관광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방식 모색
- 융합과 확장을 담은 혁신적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자원의 영역과 개발방식의 제한된 영역을 탈피하여 영역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사회 모든 자원 요소와 개발방식을 관광과 접목함으로써 융합의 독창적 관광개발, 혁신의 특화된 관광개발 방향 지향

### 3) 지속가능 : 보전과 안전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전염병 펜데믹 현상을 거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고려요인으로 정착
-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하여 지역간 경쟁적 관광개발이 아닌 관광자원 간, 지역 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관광개발 추진
- 보전과 안전을 담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 관리,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이 요구하는 분야에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적재적소에 적정한 관광개발 방향 지향

## 1.5.2 추진전략

### 가. 관광자원 미래가치 창출 및 연계관광개발 전환

-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 창출
  - 기존 관광자원들은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광객의 요구가 다양화 및 관광 시장이 세분화되면서 기존 관광자원들만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많은 분야들이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에는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자원, 기술, 서비스들이 융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일·개별중심에서 연계·복용합 방식으로 전환
  - 과거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관광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관광개발 경험이 증가하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대상자들과의 연계협력 방식이 요구됨. 또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관광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주체 간 교류도 요구됨
  - \* (정부-지자체 연계) 정부 추진 관광개발사업들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관광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
  - \* (부처간 연계) 과거 특정 자원과 분야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유지했던 부처들이 경계를 없애고 부처간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시너지 창출을 유도함
  - \* (국가간 연계) 남북 및 동북아 협력은 정치적 측면의 변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공유 자원을 통하여 공동관광권으로 인식되도록 기능을 부여함

### 나. 관광의 일상화에 대응한 관광환경 조성

- 관광수용태세 품질 제고 및 고품격화
  - 현재 관광객들이 관광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국내관광 수용태세와 편의 시설 등에 대해 기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의 시작점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수준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 관광편의 개선
  - 외래관광객이 관광활동에 필수적 항목(숙박, 음식 및 쇼핑, 교통, 안내정보)의 관광편의를 개선하여 만족도 제고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함
-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등 안전이 필수 요소로 인식되면서 방역 기준 준수는 물론 혼잡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람과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 (지역관광개발을 전인하는 관광개발) 지역 중심 관광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관광 매력성 제고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개발 추진 역량 제고 및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유도
- (관광개발과 관광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관 주도가 아닌 지역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여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구축
-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창출) 관광개발의 성과가 관광사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관광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사업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 라. 관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

-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개발 및 실현
  -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경영 활동이 변화하는 등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관광부문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제시함
- 노후 관광지 및 유희자원 회복력 제고
  - 노후된 관광지와 유희자원들은 사회문제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러한 자원들을 리모델링이나 관광기능을 부여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유희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
  - 관광산업 운영 및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광객 만족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포용·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마. 관광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 (관광개발 효율적 추진) 관광개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적인 추진, 관광개발계획의 실천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기반 마련
- (관광개발 정책효과 제고) 관광개발 수단 및 제도를 정비하여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도모함으로써 관광개발 정책효과 제고
- (관광자원 관리 최적화) 관광자원 개발·이용·보호·관리의 주체를 범부처 통합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의 효율성을 제고

### 1.5.3 권역별 전략 및 추진계획

#### 가. 수도·강원·제주권

##### 1) 관광권역 전략

- 핵심 선도권역으로 3개 소권으로 구분 가능
- 글로벌 K관광 미래선도지대

##### 2) 시·도별 전략

###### 가) 서울

-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관광도시 서울 구축
- 스마트와 혁신으로 미래 관광도시 서울 구현
- 서울시 및 자치구간 연계 협력으로 서울의 관광목적지로서의 위상 강화
-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시 관광생태계 안정화

###### 나) 인천

- 지역 고유 특성인 ‘인천다움’ 발굴 및 ‘인천다움’의 관광 콘텐츠화
-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 관광산업의 지역 내 산업연출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화 및 뿌리내림

###### 다) 경기

- 도민 참여형 지역 주도 지속가능관광 생태계 구축
- 트렌드 선도 천년 경기 그랜드관광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차별화
- 경기도 균등발전을 위한 관광자원 역량 고도화
- 관광혁신체계구축을 통한 경기도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

###### 라) 강원

- (공간전략) 사회, 기술, 호나경,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공간의 변용에 대응
- (시장전략)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형 강원 관광
- (자원전략) 강원도의 개성을 드러내는 관광콘텐츠와 자원의 특화
- (산업전략) 강원관광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 (관리전략) 강원도 중심의 관광분권 체계화

###### 마) 제주

- 행사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 제주관광 혁신 역량 제고
- 지식기반의 마케팅 체계 및 경쟁력 강화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휴양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관광진흥의 가치 재정립

## 나. 충청권

### 1) 관광권역 전략

- ICT기반의 융합관광 중심지대

### 2) 시·도별 전략

#### 가) 대전

- 역사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속관광 숙원사업 공간 창출
- 분포된 녹색 관광 자원을 활용한 클러스터 이원화 계획 수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력적인 테마형 대전관광 활성화
- 관광 거점 매력성 확보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 계획 수립

#### 나) 세종

- 비즈니스 관광과 의료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MICE 산업도시
- 다양한 역사자원과 도시 인프라가 연계되는 융·복합 스마트 관광도시
- 세종호수공원과 금강의 수변을 연계하는 수변형 랜드마크 도시
- 6차 산업과 농촌체험이 함께하는 도농 복합형 관광도시

#### 다) 충북

-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 도시관광 매력 확충 및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
- 충북 관광 브랜딩 및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라) 충남

- 해륙자원(해양+내륙)을 활용한 수도권 휴양도시 건설
- 소규모 힐링·체험·치유의 여가체험공간 창출
- 내륙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수변레저관광 활성화
- 찬란한 히스토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 입체적 글로벌 유니버설디자인기반 무장애관광지 조성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기반 생태관광활성화

## 다. 전라권

### 1) 관광권역 전략

-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콘텐츠 관광 중추지대

## 2) 시·도별 전략

### 가) 광주

- 킬러콘텐츠 확충을 통한 3향(예향, 의향, 미향)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추진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광주만의 생태관광환경 조성
- 광주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연계 강화

### 나) 전북

- (사람) 전북도민과 관광객 중심의 관광환경조성 방안 마련
- (혁신) 4차 산업혁명에 혁명에 따른 관광생태계 능동적 대응
- (안전)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대표 힐링 여행지 육성
- (콘텐츠) 관광자원의 재해석 및 재발견을 통한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

### 다) 전남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 스마트형 블루투어 관광콘텐츠 발굴
-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형 연계관광루트 개발(블루투어 Triangle)
-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연대기적 에듀테인먼트형 관광

## 라. 대경권

### 1) 관광권역 전략

- 세계로 열리는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 2) 시·도별 전략

#### 가) 대구

- 대구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 만들기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관광도시 만들기
- 기후변화, 재난재해, 전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관광도시 만들기
- 글로컬 관광도시를 위한 상생하는 관광도시 만들기

#### 나) 경북

-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혁신체계 마련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마케팅 전개

**마. 부울경권****1) 관광권역 전략**

- 산업기반 해양 엔터테인먼트 메가관광지대

**2) 시·도별 전략****가) 부산**

-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함께
- 국제관광도시 브랜드와 함께
- 안전한 해양레저관광과 함께
- 스마트한 융·복합관광과 함께

**나) 울산**

- 친환경 생태문화 관광특화도시 조성
- 영남권 대표 관광체류도시 조성
- 관광객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친화도시 조성

**다) 경남**

-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
-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도민의 삶과 문화를 연계한 경남형 생활밀착형 공간 창출

**1.6 계획의 기대효과**

- 국가 및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전국 관광자원의 보호·이용·개발·관리를 통하여 관광유인력 및 관광만족도를 제고시킴으로써 주변국들과의 관광자원 및 시설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
- 국내·외 관광객 수용대세 확충을 통한 관광기회 확대
  - 국민관광 및 외래관광객 등 미래에 증가할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공간의 질적 활용을 통한 관광수용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관광기회를 확대함
- 관광개발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에 기여
  - 지역 편의시설의 확대, 지역 고용기회의 증가, 주민의 참여 활성화, 관광개발의 지역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적 개발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함
- 미래 국토 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부처별 개발계획을 관광개발 측면에서 통합·조정하여 체계적인 국토 이용정책에 기여함

# 02

## 대상지역의 설정

2.1 대상지역의 설정

2.2 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 제2장 대상지역의 설정

### 2.1 행정구역상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의 확충 및 관광계획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 2.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목별 대상지역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설정함

< 표 2.2 - 1 > 항목별 대상지역

구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대상 지역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 정책	○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	대한민국 전역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대한민국 전역

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89호(2020.12.22.), 환경부

# 03

##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3.2 대안의 설정

## 제3장 대안의 설정

### 3.1 대안의 종류 설정

####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정책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며, 본 정책계획에 대한 대안은 다음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비교·검토함.

< 표 3.1.1 - 1 >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1.2 대안의 종류 선정

-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대안의 종류 선정은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 대안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현 단계에서 입지, 시기·순서 등에 대한 계획수립이 어려워 대안 설정에서는 제외함

< 표 3.1.2 - 1 >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비 고
①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
②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③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④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⑤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⑥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장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 3.2 대안별 비교·검토

#### 3.2.1 “계획비교” 대안의 비교·검토

- 계획수립(Action)과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표 6.2.1-1>과 같음.

< 표 3.2.1- 1 >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계획미수립(No Action)	계획수립(Action)
계획비교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 및 관련협약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li> <li>○ 지역유휴자원을 재활용하여 토지이용 효율 제고</li> <li>○ 생태축, 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li> <li>○ 관광지의 자연재해대책 강구로 피해손해 예방</li> <li>○ 미래 관광트렌드의 반영으로 국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자원 영역 확장으로 다양한 신규 관광자원 창출</li> <li>○ 대표 문화콘텐츠의 국제관광 경쟁력 제고</li> <li>○ (미래)기술과 희소가치가 결합한 미래형 관광자원 발굴</li> <li>○ (개인별)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세밀한 관광개발</li> <li>○ (정부·지자체)정부와 지자체의 연계 관광개발 추진</li> <li>○ (중앙부처)관광다양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li> <li>○ (국제)남북 및 동북아 연계 관광자원 개발</li> <li>○ 융복합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확대</li> <li>○ 다양한 자원과 기술이 결합되면서 관광자원 범위가 확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대의 변화에 적용이 어려움</li> <li>○ 환경보전 관련 최근 트렌드 반영 미흡</li> <li>○ 정부와 지자체, 부처간 협력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체계 및 연속성 결여</li> <li>○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기존의 양상과는 다른 환경영향 가능성 우려</li> </ul>
선정	-	◎

### 3.2.2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 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권역 설정의 대안으로서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5개 대권+17개 시·도), 17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관광권 설정, 개방), 시·도 통합권(9개 대권)의 3개 대안의 설정안을 비교하였음

< 표 3.2.2- 1 > 수단·방법 대안의 비교·검토

평가영역	대안1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1 <sup>3</sup> +4) 관광연합 대권 +17개 시·도)	대안2 (17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대안3 (시·도 통합권 : 9개 중권)
공간구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역은 5개 대과 17개 시·도가 중첩된 공간이며, 관광단위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권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율 관광협력권은 17개 시·도 기반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역이 주도적으로 협력권을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통합권은 인접권역간의 통일된 관광계획을 반영한 권역으로 9대 대권으로 구분</li> </ul>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상생] 국가적 차원의 지역간 연계사업의 체계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추진 가능</li> <li>○ [통합관리] 편협, 편중,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의 통합적 관리 가능</li> <li>○ [관광수요]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변성] 대권 설정 원칙만 제시, 지방분권 및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의 유연한 대응</li> <li>○ [확장성]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한 관광공간 창출</li> <li>○ [실천성] 행정구역 중심의 집행력 제고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실행계획 추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접권역(시·도 통합)과의 연계협력 가능</li> <li>○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li> <li>○ 관광객 이동성(관광수요) 일부 반영</li> </ul>

평가영역	대안1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 : 5개(1 <sup>3</sup> +4) 관광연합 대권 +17개 시·도)	대안2 (17개 시·도 기반 지역자율 관광협력권 : 관광권 설정, 개방)	대안3 (시·도 통합권 : 9개 중권)
단점	○ 시·도 통합형 보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관광행정 서비스의 권역간 격차 발생 ○ 인구감소 및 저성장위기로 관광경쟁력 저하 우려 ○ 연계협력, 관광이동수요 반영과 협의도출을 위한 별도 지원 필요	○ 시·도 통합형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체계 부재 ○ 시·도 통합 추진을 위한 별도 조정과정 필요 ○ 시·도 통합 관련 정책사업 추진 부재 및 경유형 시장 미형성으로 지자체간 연계 미흡
선정	◎	-	-
선정 사유	○ 제4차 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다핵구조의 중층적 관광권역으로 앞서 제시한 설정 원칙을 기반으로 관광이동량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관광자원 등의 공급계획, 장래 교통계획분석, 관련 상위 계획 등의 다양한 공간단위의 레이어 분석을 통해 17개 시도권역과 더불어 5개의 관광대권(광역)으로 설정함		

### 3.2.3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검토

- 관광수요의 대안으로 추세수요와 목표 수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비교하였음

평가영역	대안1 시·도별 예측치 합산 (2031국민국내관광총량 4.5억 명, 외래관광객 총량 4.0천만명)	대안2 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연구진 추정 (2031국민국내관광총량 4.4억 명, 외래관광객 총량 2.6천만 명)
장점	○ 지역별 추세 반영으로, 지역이 체험하는 관광객 수치와 근사	○ 과거 데이터의 증가추세가 반영된 예측으로, 지역별 합산 결과보다 보수적
단점	○ 다지역 방문자가 제거되지 않아, 전체 관광객 과대추정 우려	○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수반하는 소비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 존재
선정	-	◎

# 04

##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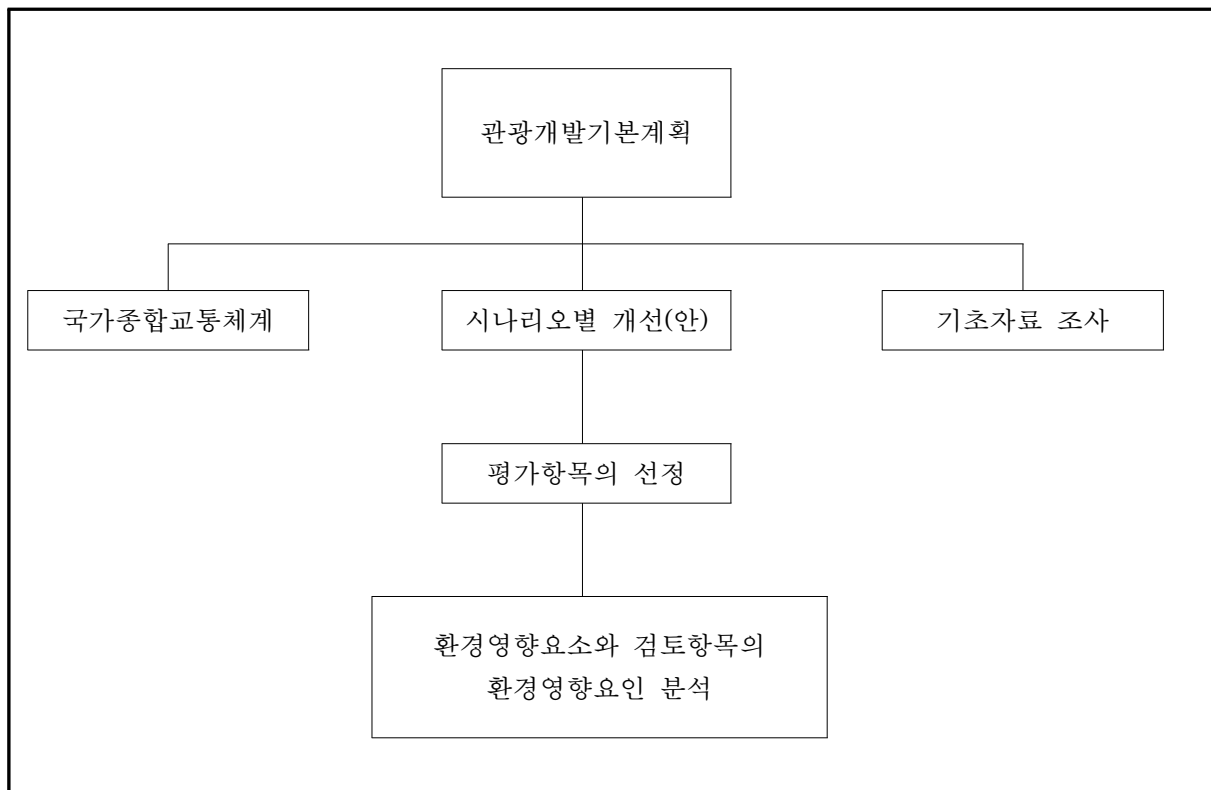
### 4.1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설정

##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 본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관광개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관광시설의 확충 및 관광개발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따라서 평가항목 등은 관광개발체계의 지침이 되는 정책계획임을 고려하여 국가시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설정하도록 하였음

### 4.1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설정

- 평가항목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 ·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또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설정은 시나리오별 개선사항(안)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그림 4.1.1-1) 평가항목의 설정 절차

#### 4.1.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 가.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항목

- 평가항목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을 참조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시나리오별 개선(안)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음



&lt;표 4.1.1-1&gt;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범위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정책계획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li> <li>-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변경)</li> <li>-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1~'25)</li> <li>-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li> </ul> </li> </ul>	대한민국 전역
(2) 국제 환경 동향·협약·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정책계획이 국제적 환경관리 협약·조약·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는지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협약</li> <li>- 생물다양성협약</li> </ul> </li> </ul>	대한민국 전역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행정계획 및 다른 행정계획과의 부합여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국토종합계획</li> <li>-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li> <li>-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2016~2020)</li> <li>-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2018~2027)</li> <li>-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li> <li>-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 계획</li> <li>-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2021~2030)</li> </ul> </li> </ul>	대한민국 전역
(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검토</li> </ul>	대한민국 전역
다)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 검토</li> </ul>	대한민국 전역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전망, 수요 및 공급규모 등과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li> </ul>	대한민국 전역
(3) 환경 용량의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검토</li> </ul>	대한민국 전역

# 05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5.2 행정예고 실시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5.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5.1.1 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 내용 공개 : “평가 항목 및 내용”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
- 공개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통신망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5.1.2 주민 의견 반영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 등 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 5.2 행정예고 실시

-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개요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함
- 심의추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기간 : 2021.08.05
- 심의내용
  - 총괄의견
  - 대상지역의 설정
  - 대안
  - 평가항목의 범위·방법 등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기타
- 위원인수 : 8인(위원장포함)

<표 6.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및 의견제출 여부

소속	성명	의견제출 여부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권 ○ ○	●	-
환경부	강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 ○ ○	●	심의 미참석
충청북도청	고 ○ ○	●	-
금강유역환경청	전 ○ ○	●	-
주민대표	윤 ○ ○	●	-
민간전문가	김 ○ ○	●	-
민간전문가	김 ○ ○	●	-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 총괄의견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을 선도하고 법정계획 성격을 갖는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자 최상위 국가관광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지 작성 시 계획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비교와 함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대안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안종류(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의 대안 선정시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수요와 환경영향 저감 등 대안종류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
  - (계획비교) 제4차 계획수립(Action)의 단점이 제시되지 않았고, 계획미수립(No Action) 시와 비교하여 선정할 사유 부재
  - (수단·방법) 대안 1~3의 보다 세부적인 장·단점 비교·분석 필요(대안2·3의 장점이 있음에도 대안1의 단점은 비교적 단순하게 검토되었음)
  - (수요·공급) 국내·외 관광행태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설정, 적절한 권역의 배분 및 관광수요별 대안(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 등)의 비교·검토를 추가 필요
  - (기타 : 환경영향 저감 대안)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별 긍·부정적 환경영향을 선별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추진사업을 감축하는 등 환경영향 저감 대안의 비교·검토를 추가 필요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계획 외에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 관광개발계획과 관계되는 국가환경계획의 부합여부 검토 필요
  -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생태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등은 '국가환경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부문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등 국제동향, 생물다양성 협약 등 계획과 연관되는 사항 반영 필요

##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제시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전략 및 추진방안이 국가 관광개발 비전과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제시

##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하여 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관광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제시
- 관광수요의 예측은 관광개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므로 관광수요 추정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제시
- 전국 관광수요 및 공급, 지역별·계절별 관광공급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제시
-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이 가능한지 검토·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6. 기 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

2021. 8. 3.

심의위원 : 강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식)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총괄의견 : 없음

○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토지이용 구상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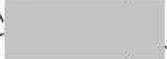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6. 기 타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

2021. 8.

심의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총괄의견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법령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국토환경보전 차원의 대안 검토 등을 통해 동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대안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본 준비서에는 시·도 기반 지역자율 편성, 시·도 통합권역 구분 등으로 계획의 대상 선정방법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녹지축과 생태우수 지역의 보전 등 국토환경보전 측면의 대안 설정을 통해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환경영향 가중 문제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평가서와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게시·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
6. 기 타
  - 의견없음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서면심의(√)

2021. 8. 2.

심의위원 :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식)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토지이용 구상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6. 기 타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

2021. 8. 2.

심의위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서식)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총괄의견

-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검토의견 등을 작성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없는 경우 : 의견없음에 “√” 표시
- ※ 평가준비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수정의견에 “√” 표시하고, 향후 평가협의 회 심의·의결을 위한 수정의견 및 그 사유를 작성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대상지역 설정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토지이용 구상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대안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안 설정의 수정 및 추가 대안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 수정의견(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

- 수정의견에 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의견수렴계획에 대한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 8.1.1 -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6. 기 타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 ), 서면심의( )

2021 . 07 . 30 .

심의위원 : 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계획명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총괄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며 현세대의 필요 뿐 미래 세대의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 및 여건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수립한다고 볼 때, 이를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여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필요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3. 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제시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변경),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있어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여부만을 제시하였으나, 다각적인 환경성 정보를 포함하여 각 권역별 환경특성 및 관광자원 등을 고려한 관광권역별 관광 공간계획 구축 여부 검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6. 기 타

□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 )

2021 . 8 . 2 .

심의위원 : 김 

### 6.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결서</b>		
<p><input type="checkbox"/> 안 건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p> <p><input type="checkbox"/> 심의결과 : 과반수 출석(7인/8인)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7인)으로 의결</p>		
위 원	의결내용	심의의견
위원1	가결	• -
위원2	가결	• -
위원3	가결	• -
위원4	가결	•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 보전계획에 부합한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필요
위원5	가결	• -
위원6	가결	• -
위원7	가결	• -

□ 심의 의결사항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의결(안)
1. 총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며 현세대의 필요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 및 여건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수립한다고 볼 때, 이를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여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필요(김성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여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계획, 법령을 제시하고 동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 중점 검토·제시하여야 함(금강유역환경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본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입지계획이 없는 정책계획으로서 관련 상위계획의 방향성만 반영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환경보전 차원의 대안 검토 등을 통해 동 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금강유역환경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 국토환경보전 차원의 대안 검토 등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입지가 설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검토가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을 선도하고 법정계획 성격을 갖는 체계적·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자 최상위 국가관광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계획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비교와 함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계획비교 대안, 수단·방법 대안 등의 다양한 대안을 비교하겠음</li> <li>○ (반영)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정책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계획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작성되어야 함. 권역별 전략 목표는 설정하였으나 각 전략 목표별 지표설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KE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전략목표별 지침을 작성하고 지침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환경정책들에 대한 개요만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각 정책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여야 함(KE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본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입지계획이 없는 정책계획으로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책과의 부합성, 연계성,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겠음</li> </ul>
2.평가대상지역 설정	대한민국 전역	-	-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의결(안)
3. 대안	(계획비교)계획수립과 계획 미수립에 따른 비교·분석 (수단·방법 비교)	<p>○본 준비서에는 시·도 기반 지역자율 편성, 시·도 통합권역 구분 등으로 계획의 대상 선정방법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녹지축과 생태우수지역의 보전 등 국토환경보전 측면의 대안 설정을 통해 계획 수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금강유역환경청)</p>	<p>○(미반영)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2]의 정책계획으로 상세한 지구계획 수립 및 구역이 결정되지 않아서 녹지축과 생태우수지역의 보전 등 국토환경보전 측면의 대안 설정은 반영 어려움</p>
		<p>○관광개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환경부)</p>	<p>○(반영) 계획비교, 수단·방법 등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설정 및 검토를 통하여 본 기본계획의 최적안 선정·제시하겠음</p>
		<p>○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안종류(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의 대안 선정시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수요와 환경영향 저감 등 대안종류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환경부) -(계획비교) 제4차 계획수립(Action)의 단점이 제시되지 않았고, 계획미수립(No Action)시와 비교하여 선정한 사유 부재(환경부) -(수단·방법) 대안 1~3의 보다 세부적인 장·단점 비교·분석 필요(대안 2·3의 장점이 있음에도 대안1의 단점은 비교적 단순하게 검토되었음) (환경부) -(수요·공급) 국내·외 관광행태 동향을 바탕으로 향후 시나리오를 설정, 적절한 권역의 배분 및 관광수요별 대안(고수요/기준수요/저수요 등)의 비교·검토를 추가 필요(환경부)</p> <p>-(기타 : 환경영향 저감 대안)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전략별 긍정·부정적 환경영향을 선별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추진사업을 감축하는 등 환경영향 저감 대안의 비교·검토를 추가 필요(환경부)</p>	<p>○(반영)대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검토를 시행할 것이며, 관광수요와 환경영향 저감 등 대안 종류에 대한 추가 검토하겠음</p> <p>-(반영)&lt;계획비교&gt;제4차 계획수립의 단점을 제시하고, 선정사유를 제시하겠음</p> <p>-(반영)&lt;수단·방법&gt;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장·단점 비교·분석을 하겠음</p> <p>-(반영)&lt;수요·공급&gt; 제3차관광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수요분석과 공급분석으로 분리하였음. 특히 수요분석에서는 외래관광객과 국내관광객 추정단위 불일치를 개선하였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시계열분석이 아닌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관광수요의 대안으로 추세수요와 목표수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겠음</p> <p>공급분석은 원단위 지표를 활용한 수급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공급분석을 추진하여, 관광자원을 유형화하고 주요 유형에 대한 관광객 유치 기여도를 분석하였음</p> <p>-(미반영) 환경영향 저감 대안)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지침계획이자 정책계획으로서 추진전략에 구체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긍정·부정적 환경영향을 선별하여 비교·검토가 어려움</p>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 · 의결(안)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2) 국제환경동향 · 협약 · 규범 나) 계획의 연계성 · 일관성 (1)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다)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1) 공간 계획의 적정성 (2) 수요 · 공급 규모의 적정성 (3) 환경용량의 지속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 환경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제시(환경부)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변경),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 2025) (김성중)	○(반영)<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변경),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 '25),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과 같은 국가환경 정책을 추가하여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작성하겠음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있어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여부만을 제시하였으나, 다각적인 환경성 정보를 포함하여 각 권역별 환경특성 및 관광자원 등을 고려한 관광권역별 관광공간계획 구축 여부 검토 (김성중)	○(반영)<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관광권역별 관광공간계획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라기 보다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내용적 범위로 판단됨. 다만 본 계획에서는 권역별 환경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환경성 정보를 포함하겠음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함 (금강유역환경청)	○(반영) 본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적절히 작성하도록 하겠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 · 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환경부)	○(반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 · 방법을 구체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계획 외에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관광개발계획과 관계되는 국가환경계획의 부합 여부 검토 필요(환경부)  -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생태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등은 ‘국가환경정책’ 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정(환경부) - ‘국제 환경 동향 · 협약 · 규범’ 부문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등 국제동향, 생물다양성협약 등 계획과 연관되는 사항 반영 필요 (환경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반영)관광개발기본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지침계획으로 권역설정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임. 다만, 권역설정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관광자원의 보전, 기존 자원의 재생과 재활용, 적정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탄소중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본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반영)국토종합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생태관광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등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음 -(반영)탄소중립 등 국제동향, 생물다양성협약 등 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 · 의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연계성 ·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 · 제시</li> <li>-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 · 이용 · 관리에 관한 전략 및 추진방안이 국가 관광개발 비전과 시 · 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제시 (환경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국토종합계획, 관련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는지 검토 · 제시하고 관광자원의 보호 · 개발 · 이용 · 관리에 관한 전략 및 추진방안이 국가 관광개발 비전과 시 · 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 · 제시하도록 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적정성 ·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하여 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관광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제시(환경부)</li> <li>- 관광수요의 예측은 관광개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므로 관광수요 추정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 · 제시(환경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한 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관광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제시하겠음</li> <li>- (반영)관광수요 추정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 · 제시하겠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관광수요 및 공급, 지역별 · 계절별 관광공급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 제시(환경부)</li> <li>-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특성 ·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이 가능한지 검토 · 제시 (환경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반영)지역별 · 계절별 관광공급능력 등 분석 등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범위로 판단됨</li> <li>- (반영)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겠음. 특히,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방향을 제시하겠음</li> </ul>

구분	평가준비서 내용	제기된 수정의견	최종 심의·의결(안)
5. 주민의견 수렴계획	<p>「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 등의견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p> <p>「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때 해당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p>	<p>○8.1.1-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김재현)</p> <p>○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환경영향 가중 문제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요약본을 작성하여 평가서와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게시·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함(금강유역환경청)</p>	<p>○(반영)본 계획은 국가단위 정책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의거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임</p> <p>○(미반영) 본 제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5조의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의거하여 시행할 계획임</p>
6. 기타	-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환경부)</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환경부)</p>	<p>○(반영) 심의의견 미반영에 대한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p> <p>○(반영)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겠음</p>

## 96.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 총괄의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며 현세대의 필요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 및 여건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수립한다고 볼 때, 이를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여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 필요
- 국가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본 정책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계획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작성되어야 함. 권역별 전략 목표는 설정하였으나 각 전략 목표별 지표설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가환경정책들에 대한 개요만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각 정책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여야 함

#### □ 심의의견

#####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한민국 전역

##### 2. 대안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안종류(계획비교 및 수단·방법)의 대안 선정시 보다 명확한 근거 제시·검토가 필요하며, 관광수요와 환경영향 저감 등 대안종류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
  - (계획비교) 제4차 계획수립(Action)의 단점이 제시되지 않았고, 계획미수립(No Action) 시와 비교하여 선정한 사유 부재
  - (수단·방법) 대안 1~3의 보다 세부적인 장·단점 비교·분석 필요(대안 2·3의 장점이 있음에도 대안1의 단점은 비교적 단순하게 검토되었음)
  - (수요·공급) 관광수요의 대안으로 추세수요와 목표 수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

#####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제시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변경),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

-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계획 중 국토종합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생태관광증장기 발전계획 연구 등은 '국가환경정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정
-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부문에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등 국제동향, 생물다양성협약 등 계획과 연관되는 사항 반영 필요

○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계획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제시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전략 및 추진방안이 국가 관광개발 비전과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 검토·제시

○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 평가준비서에서 제시한 각종 보호구역의 분포 여부를 고려하여 관광권역 설정 및 권역별 관광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제시
- 관광수요의 예측은 관광개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므로 관광수요 추정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토·제시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을 참고하여 조사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평가 미시행

**6. 기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미반영 시 그 사유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2021. 08. 05.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권